


조례안 자구정리

-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4. 2. 28.)에서 원안가결된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 정리하고자 함.

제 정 안	자 구 정 리
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			행정복지위원장
담당자	전문위원	사무국장	
박영은	김현희	조성득	